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23309
등록일자	2015. 10. 20.
결재일자	2015. 10. 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건지도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박선희	이순옥	김영수	10/21 서명옥
협조자			

- 함께 나누는 가계부담, 더불어 행복한 강남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계획



- 추진기간 : 2015. 10월30일부터 계속 실시
- 대 상
  - 기저귀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조제이유식 포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소요예산 : 57,511천원

2015. 10. .

강 남 구  
(보 건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지침(복지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복지부 신규사업 안내 지침 및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시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예산교부 시 간주처리 및 산모건강관리 예산 전용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만 1세이하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함께 나누는 가계부담, 더불어 행복한 강남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계획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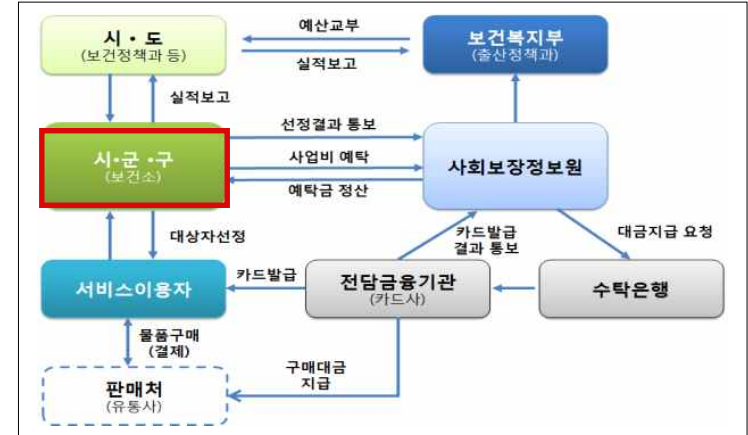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침(복지부)

## II 추진배경

-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지원대책 필요
  - \* 자녀수 0~1명인 유배우부인의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로 자녀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남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사연)
-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로 0세아 양육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 월소득 100~200만원 저소득층 3인가구 한자녀 양육비 0세아 613천원, 1세아 533천원
  - \*\* 0세아 양육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

## III 운영방식

###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주체 및 역할

사업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li> <li>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li> <li>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li> </ul>
	사회서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li> <li>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ul>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li> <li>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li> </ul>
자치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li> <li>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li> </ul>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li> <li>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li> <li>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li> <li>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li> </ul>
	전담금융기관(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li> <li>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li> <li>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li> </ul>
	수탁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li> </ul>

## IV 세부추진계획

### ■ 지원대상

####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 ③ 임질(A54.8, A54.9)
- ④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수두(B01, B02)
-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 ⑧ HTLV감염(C91.5, Z22.6)
- ⑨ 알코올 중독(F10)
- ⑩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⑪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⑫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⑬ 방사선 치료(Z51.0)
- ⑭ 항암제 치료(Z51.1)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 선정기준

####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64,078	32,659	9,963	33,048
3인	1,376,546	42,212	18,435	42,490
4인	1,689,013	51,325	31,089	51,595
5인	2,001,481	61,379	47,997	62,201
6인	2,313,948	70,377	62,319	71,216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 자격 판정 원칙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 ③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 처리
-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

## ■ 지원기간 및 금액

###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신청일	지원기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12개월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0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개월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개월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개월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개월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5개월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4개월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개월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개월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개월

### ●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유형	32,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75,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43,000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 시

###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별 지원액 산정(표)

#### 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유형) - 영아 1인당 월 32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청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32천원×12개월=384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10개월=32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9개월=288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8개월=256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7개월=224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6개월=192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5개월=16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4개월=128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3개월=96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2개월=64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1개월=32

#### 나.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75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청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75천원×12개월=90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10개월=75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9개월=675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8개월=6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7개월=525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6개월=45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5개월=375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4개월=30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3개월=225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2개월=15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1개월=75

#### 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조제분유 신청일 기준 43천원(조제분유) × 잔여 개월수 만큼의 금액 추가 지원

< 잔여기간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청일	추가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43천원×12개월=516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10개월=43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9개월=387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8개월=344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7개월=301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6개월=258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5개월=215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4개월=172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3개월=129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2개월=86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43천원×1개월=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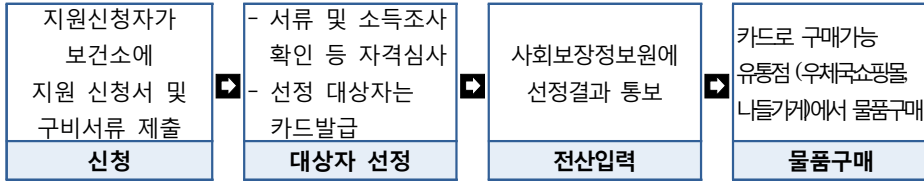
## ■ 지원절차

### ● 기본적 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이용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부터 적용, 이전은 직접 발급은행 방문하여 발급)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설문조사서 1부.
-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영아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지원신청 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V 추진일정

추진내용	월별 일정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		
홍보	★	★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	★
사업평가			★

## VI 예산

### ■ 57,511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예산과목 : 보건과, 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2015년도 확정내시 공문을 근거로 E-호조 확정내시 입력한 상태임.  
향후, 예산교부 시기에 맞춰 간주처리 후 산모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전용예정임.

## VII 기대효과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
-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VIII 향후계획

- 예산교부시 간주처리 및 예산 전용 후 구비 확보
- 홍보물 제작 및 의료기관 홍보

- 첨부 : 1. 지원신청서 2부.  
2. 설문조사서 1부. 끝.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변경) 신청서

신규지원  조제분유 추가 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	------	------	-------

신청인	성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자택전화
	세대주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E-mail)
	신청서비스 (신규지원) [ ] 기저귀 [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변경신청) [ ] 조제분유 추가			추가 연락처
	영아수 [ ] 1명 [ ] 2명 [ ] 3명 [ ] 직접 입력( )명			

가족사항 및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해당자에 한해 작성)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신청인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li> <li>○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li> <li>○ 기타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li> <li>○ 담당공무원</li> </ul>
신청인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li> <li>○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li> <li>○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최근 월분 건보료 산정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li>○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li> <li>○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사망증명서류</li> <li>*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에 한합니다.</li> </ul>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li> <li>* <b>지음신청자가</b>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li> </ul>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내 및 유의사항

-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질병 예 :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신경정신과 관련 약물(페노바비탈, 팔로리악신 등) 노출, Herpes simplex 바이러스 1형 감염 등
- 신청 정보는 원활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게 제공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수혜를 받은 자는 그 비용만큼 환수처분을 받으며, 같은 법을 제54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개인이력 (구매이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를 위한 이용권(카드) 제작 및 배송 업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 허위·조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조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이용권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해당 신청서식은 향후 통합서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동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근거로 이용됩니다. 동 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정부지원 사업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 영아 양육자 및 가구 특성 관련 질문입니다.**

- 연령 : 만 \_\_\_\_\_세
- 성별 :  남성  여성
- 최종학력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작성
- 혼인상태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 기초생활수급 여부:  예  수급경험 있음  아니오
-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예  수급경험 있음  아니오
- 다문화가족 여부:  예  과거 그러함  아니오
- 급여 / 건강보험 여부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_\_\_\_\_원
- 세대유형: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편조부/모+미혼손자녀
- 세대 동거자 수: (본인 포함) \_\_\_\_\_명
- 세대 자녀 수: \_\_\_\_\_명 (만 1세 미만(영아) \_\_\_\_\_명)
- 가계 평균소득: 월 평균 \_\_\_\_\_원 / 연 평균 \_\_\_\_\_원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 세전)
- 가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월 \_\_\_\_\_원  
 ※ 비소비성지출(세금, 연금/저축,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현금 등)은 제외

**2] 자녀 양육비용(기저귀·조제분유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 자녀 양육 관련 월 평균 지출비용  
 ① (자녀전체) 월 평균 \_\_\_\_\_원  
 ② (영아 자녀 1인당) 월 평균 \_\_\_\_\_원
- 영아 자녀 양육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순위 명시)  
 :  기저귀  분유  의류  보행기 등 유아용품  
 이음식(식재료 포함)  기타( )

17. 월 평균,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 비용: 월 평균 \_\_\_\_\_ 원

18. 월 평균, 영아 1인당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평균 \_\_\_\_\_ 원

19.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의 가계부담 정도

- ① (기저귀)  전혀 부담 없음  부담 적음  보통  
 부담  많이 부담
- ② (조제분유)  전혀 부담 없음  부담 적음  보통  
 부담  많이 부담

**③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20. 기저귀·조제분유의 국가수준 지원 필요성 여부

- ① (기저귀)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 ② (조제분유)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2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만족도 여부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효과성 여부

- 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여부  
 매우 도움  도움  보통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 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23. 동 사업에 대한 제도보완 요청 또는 건의사항 (자유 기술)

**④ 출산장려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24. 출산계획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2가지 선택)

- 현금지원  양육용품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기타( )

25. 출산을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정책 종류(2가지 선택)

- 현금지원  양육용품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기타( )